



: 2018-11-22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137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교회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8. 5. 2.
판 결 선 고 2018.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REDACTED]도교육감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



1) 원고는 [] 구 [] 로 [] 번지에 있는 사단법인 [] 교회라는 종교 단체 소속의 교회이다. 원고는 2012. 3.경부터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 시 [] 면 [] 길 [] 에서 대안학교인 [] 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 교육장'이라고 한다)을 경유하여 2015. 3. 30. [] 도교육감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학교 설립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3) [] 도교육감은 2015. 6. 22. 및 그해 8. 25. 두 번에 걸쳐 원고에게 학교 설립계획서의 검토결과에 따른 추가사항을 보완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7. 22. 및 그해 10. 13. 두 번에 걸쳐 [] 도교육감에게 '학교의 설립사유 또는 목적 및 운영방향, 연도별(2016년~2018년) 세입예산안 중 학생 1인당 연간 학부모 부담 비용'을 조정하여 설립계획서를 추가·보완하였다.

4) [] 도교육감은 2016. 3. 8. [] 교육장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학교설립계획이 적합하다고 통보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안내하도록 요청하였다.

- 학교 종별: 각종학교(대안학교)
- 설립자: 원고
- 개설과정: 중·고등학교 과정(학력인정)
-중학교 9학급 180명, 고등학교 6학급 120명으로 총 15학급 300명(학급당 20명)
- 개교 예정일: 2016. 9. 1.

5) 원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6. 3. 23. [] 교육장에게 대안학교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 교육장은 2016. 4. 8. [] 도교육감에게 위 신청서 및 검토자료를 제출하였다.



6) [redacted]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는 2016. 6. 22. 원고의 대안학교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학교설립계획승인 당시의 내용과 지금 실제로 운영되는 내용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불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7) 이에 따라 [redacted]도교육감은 2016. 6. 28. 원고에게 2016년 현재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안학교를 설치하였고,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상당히 많아 당초의 설립 목적과 다르게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일반적인 중·고등학교에 비하여 입학금, 수업료 등 제반 비용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학교설립인가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15. 9. 1. [redacted]시 [redacted]면 [redacted] [redacted] 지상에 교육원 용도로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건축면적 3,609.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6. 12. 14. 피고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원시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을 공사대금 1,810,506,444원으로 산정하여 산출한 취득세 50,694,180원과 지방교육세 2,896,810원, 농어촌특별세 3,621,010원 합계 57,212,000원을 신고하고, 2017. 2. 13.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였다.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1) 한편 원고는 [redacted]도교육감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redacted]도교육감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도교육감은 원고에게 학교설립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한 후 설립 목적이나 그 밖의 사항에 있어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에 근거하여 재처분을 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학교설립계획이 적합하다고 보아 그 계획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상당히 많아 대안학교의 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제반 비용이 일반 중·고등학교의 비용을 훨씬 초과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추상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불승인하였다.

따라서 ■■■■도교육감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3) ■■■■도교육감은 2017. 4. 3. 원고에게 링컨학교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라.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1)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4.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57,212,000원을 면제·환급하여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가 받은 행정심판 재결서는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이므로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이 있는 때로 소급하여 해당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이지, 당초 처분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반대의 처분인 학교설립인가 승인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2016. 12. 14.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원고가 2017. 4. 3.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그 취득 당시에는 학교설립 미인가 상태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6.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법한 [redacted]도교육감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던 중인 2016. 12. 14.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14. 재결로 위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redacted]도교육감은 2017. 4. 3. 원고에게 링컨학교 설립을 인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취소재결에 따라 당초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일인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인 원고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도교육감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이러한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취득 당시인 2016. 12. 14.에



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의미

(1)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65조 제2항, 제6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②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③ 관할청은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학교의 운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초·중등교육법이 위와 같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 반드시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까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면제대상 중의 하나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고 함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관계 규정의 문언이나 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2070 판결 참조).

(3) 그런데 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3. [redacted]도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그때서야 비로소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재결의 효력

(1) 구 행정심판법(2017. 4. 18. 법률 제14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행정청)에게 명하고, ②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위 행정심판법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참조).

(3)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로 [redacted]도교육감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면 [redacted]도교육감은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



가 있을 뿐이고, 나아가 [redacted] 도교육감이 재결에서 명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하거나 그 이후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여 다시 이전의 학교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그 재결서에서 '[redacted] 도교육감이 설립 목적이 나 그 밖의 사항에 있어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에 근거하여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

(4)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재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redacted] 도교육감이 원고에게 학교설립인가를 한 것과 같은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는 [redacted] 도교육감이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7. 4. 3. 원고에게 학교설립인가를 하기 전까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10 판결의 원용 가능 여부

(1)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므로,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재결의 소급효로 인해 [redacted] 도교육감이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한 2016. 6. 28.부터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행정청이 기존 이사에 대하여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하고, 다시 직권으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이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기존 이사의 지위도 소급하



여 회복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반면에 이 사건은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으로 ■■■도교육감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재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그 불승인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취소재결에 따라 위와 같은 법률상 효과를 넘어 적극적으로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자의 지위까지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결국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이를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라)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더라도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한 것은 모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교육감의 위법한 행정처분이 없이 정상적으로 학교설립인가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원고는 당연히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법률적으로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이를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은 그 주체를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보다 폭넓게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된다.¹⁾

이처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학교를 경영하는 자'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여기에 장래 학교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또한 원고와 같이 학교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설립인가의 준비단계에 있는 자와 이미 교육감의 인가를 받고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세법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취득세 면제 대상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교육감의 학교설립인가가 있었는지 여부와 같이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취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④ 더군다나 원고는 이미 2012. 3.경부터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링컨 학교를 설치·운영하고, [redacted]도교육감에게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인 2015. 9.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재결이 있기 전인 2016. 12. 14.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6호는 원래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만을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다가,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 2018-11-2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본 기대나 신뢰가 사회적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박상한
	판사	김용수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② 관할청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 구 행정심판법(2017. 4. 18. 법률 제14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재결의 구분)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